보도 자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소 : 우)55030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36, 1층 전화 : 063-247-1503		
	메일 : jbsadd420@gmail.com 홈페이지 : https://jb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4년 11월 1일(금)
담당	양은주 063-247-1503	페이지	7매
제목	11.04. 자립생활위기 비상행동 전국동시다발 다이인(Die-in) 행동 **: 전북행동**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북장차연')와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북의 장애인단체 및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11.04

자립생활위기! 비상행동

9차 전국동시다발 다이인(Die-in) 행동 : 전북 (익산)

4대 장애인권리입법

2024년 정기국회에서 제정하라!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 장애인권리보장법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자립생활위기 지금 당장 행동하라!

STRIKE for all! STRIKE for Independent Living!

2024년 정기국회 임기 내로 4대 장애인권리입법 제정하라!

○ **일 시 : 2022년 11월 4일(월) 오후2시**

○ **장 소 : 익산역 광장**

○ **주 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3. 오는 11월 4일(월) 오후2시, 익산역에서 불의한 권력에 의해 대한민국 장애인의 권리가 총체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알리며, 이 위기 상황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경각심, 연대와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는 <자립생활위기 비상행동 전국

동시다발 다이인(Die-in) 행동>에 동참합니다. 전국 동시다발 다이인 행동은 11개 광역자치단체(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서울,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충북)에서 각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이 함께 진행합니다.

4. 2024년 11월 4일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개회하고 64일차가 되는 날로, 국회는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예산심의와 법안 처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의 논의가 가동될 것입니다. 이에 전북지역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을 비롯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은 22대 국회 정기회의에서 4대 장애인권리입법(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법'으로 변경 | 버스·택시·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 마련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제4장 자립생활 지원' 강화 개정법안(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기반한 '자립생활 권리'의 명시 |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인프라 강화 및 중증장애인의 자주적 결성체로써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위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 인권 기준에 발 맞춘 장애 개념의 사회화 등 장애인의 구체적 권리를 명시한 기본법 | 대통령 직속의 국가장애인위원회, 장애인의 필요와 욕구를 사정하는 국가장애서비스공단, 권리구제 및 심사 불복 권한 강화를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강화, 장애인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독자적 체계로서의 국가장애연구원 등 지원체계 고도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노동권 보장에 대한 책임 규정 |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여, 노동현장에서 만성적으로 배제되고 차별받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증진

5.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가 총체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 인권 기준에 해당하는 '탈시설'은 국가의 정책과 행정에서 자취를 감췄으며, 윤석열 정부의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며 반인권적 정책과 권리약탈을 주도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 400명을 해고하고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경로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400명을 해고하고 탈시설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줄어든 예산을 전부 거주시설로 쏟아부었고, 이 같은 무도한 행위에 대해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살면 6,000만원이면 되지만, 지역에서 살면 1억 4,000만원이 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의 절감과 효율성의 논리가 '존엄'과 '인권'의 가치를 앞선다는 반인권적 발언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장이 공표한 셈입니다.

6. 동시에 윤석열 정부, 오세훈 서울시장, 이들에 복무하는 세력들은 자립생활 운동 활동가들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인권과 존엄의 가치를 예산의 논리로 후퇴시키고, 정치적으로는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를 주장하는 장애인 운동 단체들을 '불법·폭력 조장 단체, 장애인을 유치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단체'로 왜곡하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전에 의해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은 사법·행정 권력에 의한 탄압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어둠이 시작되었고, 장

애인의 권리는 날마다 죽어가는 실정입니다.

7.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복무하며 장애인 운동을 탄압하고 위축시키는 데 앞장 선 이종성 국민의 힘 의원에 의해 장애인복지법이 개악되었습니다. 시설 공화국과 다름없는 대한민국 복지 지형에서 동료성과, 권익옹호, 시민으로서의 주체성 회복을 위한 중증장애인의 좁은 터전으로 버텨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된 것입니다. 당시 이종성 의원과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범법을 일삼는 기관으로 낙인찍음으로써 관리와 통제 필요성을 주장했고, 법안의 개악을 획책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정보마저 조작했습니다.[1] 이들의 법안 개악으로 인해,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의 거점으로써 발전해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저 그 정체성과 자주성을 상실하고 행정 권력에 더욱 강력히 기속될 우려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8. 장애인복지법 개악으로 인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복지시설화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복지시설화가 이대로 추진될 경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운동성, 자주성, 민주성을 상실한 채 관리와 통제에 기속된 '소규모 서비스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시설에 격리되어야 만 하는 무능한 존재, 돌봐야 할 대상이라는 뿌리 깊은 비장애인 전문가 중심의 복지 패러다임을 해체하며, '권리의 주체'로 변화시켜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위상이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9. 이 지독한 어둠의 공세를 막아야만 합니다. 장애인의 권리가 날마다 죽어가는 가운데,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는 좁은 땅 한 평만큼은 사수해야 합니다. 이에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함께 죽어가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알려내기 위해 '자립생활 위기 비상 행동, 전국 동시다발 다이인 행동'을 진행합니다. 더 이상 불의한 권력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약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22대 국회가 적극적이고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시민사회에 알리고 연대를 호소하겠습니다.

10. 다이-인(Die-in) 행동은 비장애중심사회의 억압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로, 참가자들은 '사이렌 소리'에 맞춰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땅에 누워 죽은 듯이 행동합니다. 장애인운동 활동가들은 11월 4일 전국 각 지역에서 죽은 사람처럼 누움으로써, 장애인의 권리가 죽어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사회에 알려낼 것이며, 22대 국회가 금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4대 장애인권리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11. 장애인의 권리 약탈과 자립생활 운동 탄압 중단을 위해, 4대 장애인권리입법의 정

기국회 통과를 위한 22대 국회의 적극적 책임을 촉구하는 전북의 자립생활 운동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일에 귀 언론사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자료 1] <11.04 자립생활위기 비상행동 전국동시다발 다이인> 식순 1부.
[붙임자료 2] <11.04. 자립생활위기 비상행동 전국 동시다발 다이인> 유인물 1부.

[붙임자료1] <11.04 자립생활위기 비상행동 전국동시다발 다이인(Die-in) 행동> 식순

11.04

자립생활위기! 비상행동

9차 전국동시다발 다이인(Die-in) 행동 : 전북

4대 장애인권리입법

2024년 정기국회에서 제정하라!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 장애인권리보장법

권리중심공공일자리특별법 ·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자립생활위기 지금 당장 행동하라!

STRIKE for us! STRIKE for Independent Living!

2024년 정기국회 임기 내로 4대 장애인권리입법 제정하라!

○ **일 시 : 2022년 11월 4일(월) 오후2시**

○ **장 소 : 익산역 광장**

○ **주 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사회 : 양은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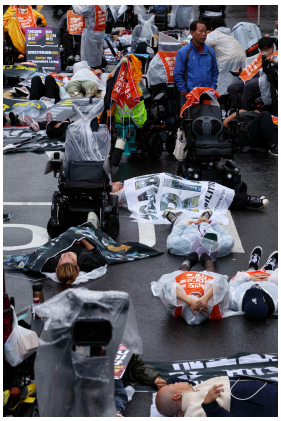
1	여는 발언	강현석 대표(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2	투쟁발언	유승권 지부장(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지부)
3	투쟁발언	늘사랑센터 활동가
4	투쟁발언	세움센터 활동가
5	다이-인(Die-in) 퍼포먼스	

[붙임자료2] <11.04 자립생활위기 비상행동 전국동시다발 다이인(Die-in) 행동> 유인물

2024년 11월 4일,
정기국회 개회 이후, 64일지났다!
22대 국회는 정기국회 회기 내로 4대 장애인권리입법* 제정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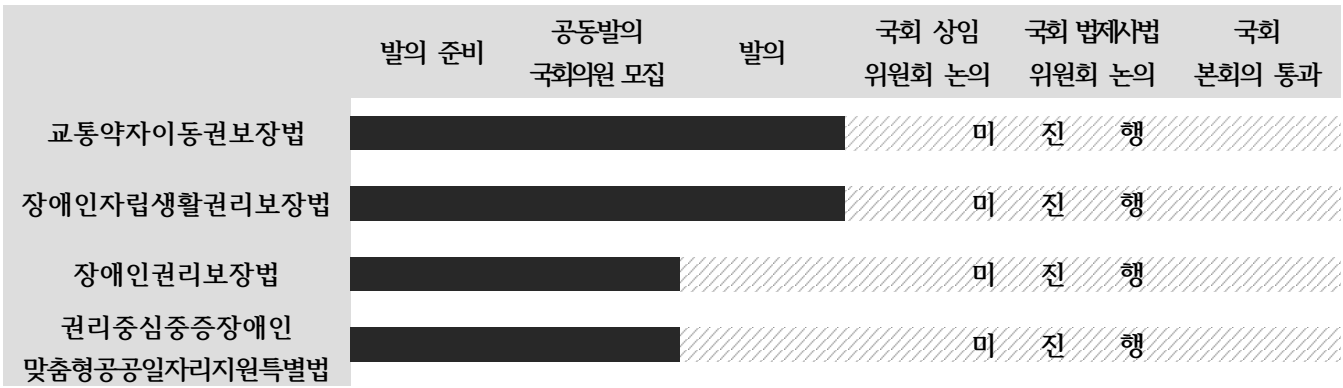
*4대 장애인권리입법이란?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장애인권리보장법,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을 말함.







시민 여러분, 우리들은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소속의 장애인운동 활동가입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를 외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 -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탈시설과 자립생활권리, 건강권 등을 - 요구하고 있으며, 각종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 마련을 국회 및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외침은 2001년 오이도역에서 어느 노부부가 지하철을 타기 위해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20여 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장애인권리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 차별의 격차는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요구하는 법안의 현재 진행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장애인권리입법의 조속한 통과 - 특히 올해 정기국회 내로 통과 - 를 목표로 전국 각지에서 <11.04. 자립생활위기 비상행동 전국동시다발 다이인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이인 퍼포먼스는 비장애중심사회의 억압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로 참가자들은 '사이렌 소리'에 맞춰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땅에 누워 죽은 듯이 행동합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장애인의 권리가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메세지를 전달하며, 국회와 정부뿐만 아니라 다이인 퍼포먼스를 목격한 시민들까지,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법'으로 변경 | 버스·택시·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 마련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제4장 자립생활 지원' 강화 개정법안(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기반한 '자립생활 권리'의 명시 |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인프라 강화 및 중증장애인의 자주적 결성체로써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위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 인권 기준에 발 맞춘 장애 개념의 사회화 등 장애인의 구체적 권리를 명시한 기본법 | 대통령 직속의 국가장애인위원회, 장애인의 필요와 욕구를 사정하는 국기장애서비스공단, 권리구제 및 심사 불복 권한 강화를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강화, 장애인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독자적 체계로서의 국가장애연구원 등 지원체계 고도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노동권 보장에 대한 책임 규정 |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여, 노동현장에서 만성적으로 배제되고 차별받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증진

중증장애인은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차별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배제된 채, 거주시설에 감금되거나 가족에게 유기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같은 차별을 보호라는 미명 아래 국가 정책으로 장려하고 발전시킨 국가입니다. 장애인 권리의 황무지 같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들이 주체성을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자각하는 한 평의 공간입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이 한 평의 공간마저 소실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을 부정하고 자립생활 권리를 갖은 행정 규약으로 제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총체적으로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최후 보루로써 불의한 정권을 비판하며 나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행정 당국의 횡포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자립생활 권리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은 작금의 현실처럼 장애인의 노동권, 탈시설 등의 권리가 행정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중증장애인들의 주체적 활동을 위한 터전이자 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자주적 단체로써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